

【9】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12. .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95. 1.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위함.

주요골자

-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안 제4조)
- 쓰레기봉투의 종류및 재질(안 제6조)
- 쓰레기봉투의 제작에관한 사항(안 제7조)
-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및 판매소지정(안 제8조)
- 일반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안 제9조)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대한 폐기물 처리방법(안 제10조)
-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정하고 감면하는 방법(안 제12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

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장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이하“일반폐기물”이라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 4 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입·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 5 조(일반폐기물의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
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
력을 제작, 배포하는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따라 배출되지 아니
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
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
로변 가로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
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용량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제 7 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양주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주군명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
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방지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6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제 8 조(쓰레기봉투의 공급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 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 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 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날 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 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과 같다.

제 10 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 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

월 60L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 14 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지도와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와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3. 기타 시책 추진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도출되는 사항등

제 15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과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 12월 2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4조 내지 제20조는 삭

제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품 목	규 격	수 수 료 (원)
냉 장 고	500L 이상	8,000
	300L 이상	6,000
	300L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콘	264 m ² 형 이상	8,000
	66 m ² 형 이상	5,000
	66 m ² 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농	120 cm장 1쪽	15,000
	90 cm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대형 4인용	5,000
책 상	양수 : 대형	5,000
	편수 : 소형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 아 노	어 프 라 이 트	10,000
	그 랜 드	15,000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문 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백 - 상자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린등은 제거 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첩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첩캔, 알루미늄 (음.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 약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공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필수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 철 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 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 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 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L)	봉투규격(가로×세로, cm)	호칭두께 (mm)
일반용	10	33 × 40	0.020
일반용	20	41 × 49	0.025
공공용 일반용	50	56 × 67	0.030
공공용 일반용	100	71 × 85	0.040

(附 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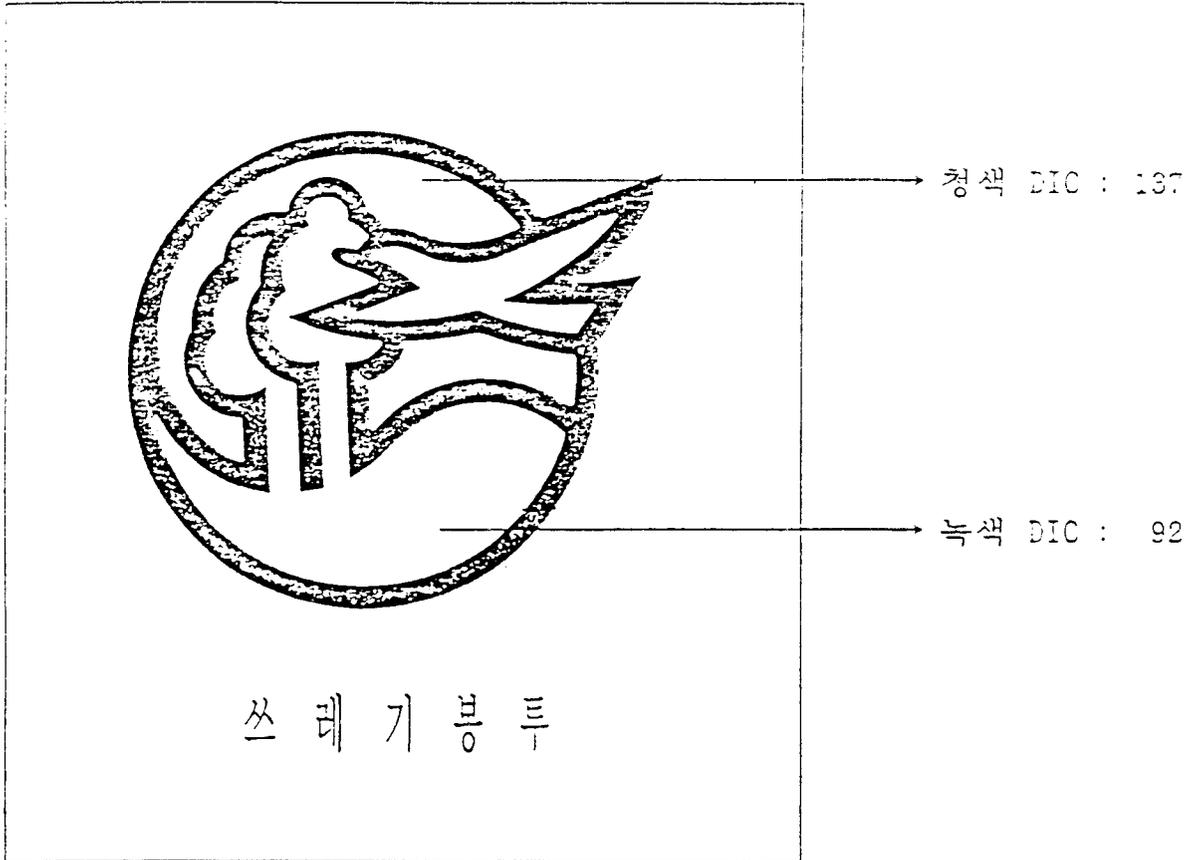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7조 관련)

18 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문장
49 cm	쓰레기봉투 (20 l) — 일 반 용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양 주 근 수
	연락처 : 양주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44 -9900, 49 -1335)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포시
	----- 41cm -----

18 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문장
49 cm	쓰레기봉투 (50 l) — 공 공 용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주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 주 근 수
	연락처 : 양주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44 -9900, 49-1335)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포시

(표 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포지판(제8조 관련)



- 주 : 1. 글씨위치는 포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포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포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포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일반용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1. 봉투규격별가격

봉투규격	쓰레기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익	총가격	판매가격
10리터	207원	40 %	21원	7원	110원	110원
20리터	414원	"	31원	15원	211원	210원
50리터	1,035원	"	62원	37원	513원	510원
100리터	2,070원	"	124원	74원	1,026원	1,020원

2.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1)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은 '95년도 봉투가격 산정시에는 폐기물학회 보고서의 경기도 지역 처리비용으로 산정하고 '96년이후는 전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함.

* 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의 처리에 따른 수집, 운반비용과 매립지이용 처리비, 소각처리비용, 처리장운영비, 운반에따른 장비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함

2) 수수료 자립도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하여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한 현시리화 방침을 적용 (매년 10 % 상향조정)

* 현실화율 : '95년 40% ----- 2001년 95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 %를 적용

*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times 수수료자립도 \times 0.09